

#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408호 2019. 4. 15.(월)

## 규 칙

고성군 규칙 제1190호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19-41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 7

고성군 고시 제2019-42호 곤기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군도16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9

## 공 고

고성군 공고 제2019-471호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3

회									
람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19년 4월 15일

고성군 규칙 제1190호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9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2조 및 제5조”를 “제2조”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법 제34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별지 제1호서식]

금고지정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남/여)	
소 재 지	본 점		전 화	
	고성지역 사 무 소		전 화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20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인

고성군수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 ----- ----- ----- -----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금고”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p>	<p>1. ----- 「지방회계법」 제38조----- ----- ----- ----- ----- ----- -----.</p>
<p>2. “일반회계”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p>	<p>2.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p>
<p>3. “특별회계”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p>	<p>3. -----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 회계처리----- ----- -----.</p>

현행	개정안
<p>4. ~ 6. (생략)</p> <p>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p> <p>2. (생략)</p> <p>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③·④ (생략)</p> <p>제10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 ----- -----.</p> <p>1. ----- 제2조 ----- -----</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 ----- 「지방재정법」 제34조 ----- -----.</p> <p>②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고성군 고시 제2019-41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1.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77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 전 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삼산면 미룡리 산90-1	삼산면 공룡로 1927-47	2019.04.1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2	영현면 신분리 563	영현면 신분2길 75-89	2019.04.1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영현면신분리)을이용 하는 두번째 도로	
3	회화면 배둔리 435-13	회화면 관리인로21번길 25-1	2019.04.1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관인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210m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4	마암면 신리 388-5	마암면 신리2길 14	2019.04.1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마암면신리)을이용하 는 두번째 도로	
5	동해면 양촌리 768-6	동해면 동해로 1642-16	2019.04.1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동해면)을 이용하여 동해로로 명명	
6	동해면 용정리 97-1	동해면 용정1길 421-16	2019.04.1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동해면용정리)을이용 하는 첫번째 도로	
7	거류면 은월리 1322-13,1322-15	거류면 용산3길 271-35	2019.04.1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거류면용산리)을이용 하는 세번째 도로	
8	하이면 덕호리 산71-1/827	하이면 하이로 138	2019.04.1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이면)을 이용하여 하이로로 명명	
9	동해면 외산리 773-3	동해면 외산로 304	2019.04.1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동해면 외산리)을 이 용하여 외산로로 명명	
10	거류면 당동리 77-2외 2필 지	거류면 거류로 681	2019.04.1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거류면)을 이용하여 거류로로 명명	
11	거류면 송산리 1043-1	거류면 송산로 224-20	2019.04.11.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거류면 송산리)을 이 용하여 송산로로 명명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 구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도로명	건물번호			
1	하일면	간곡길	96	2019. 04.11.	건물 멸실	
2	거류면	감서2길	74-126	2019. 04.11.	건물 멸실	
3	거류면	감서4길	128-17	2019. 04.11.	건물 멸실	
4	거류면	감서5길	90-10	2019. 04.11.	건물 멸실	
5	하일면	수양2길	20-2	2019. 04.11.	건물 멸실	
6	거류면	거류로	681	2019. 04.11.	건물 멸실	

고성군 고시 제2019-42호

**곶기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군도16호선)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1375번지 일원의 군도16호선 곶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업기간 연장) 고시합니다.

2019. 4. 15.

고 성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신설	군도	소로 2-162	군도 16호선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1375	7,932	마암면 두호리 532-6	마암면 삼락리 613-2	-	0.5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도로구역 변경없음(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15년 11월 12일 ~ 2017년 12월 30일
- 변 경: 2015년 11월 12일 ~ 2019년 12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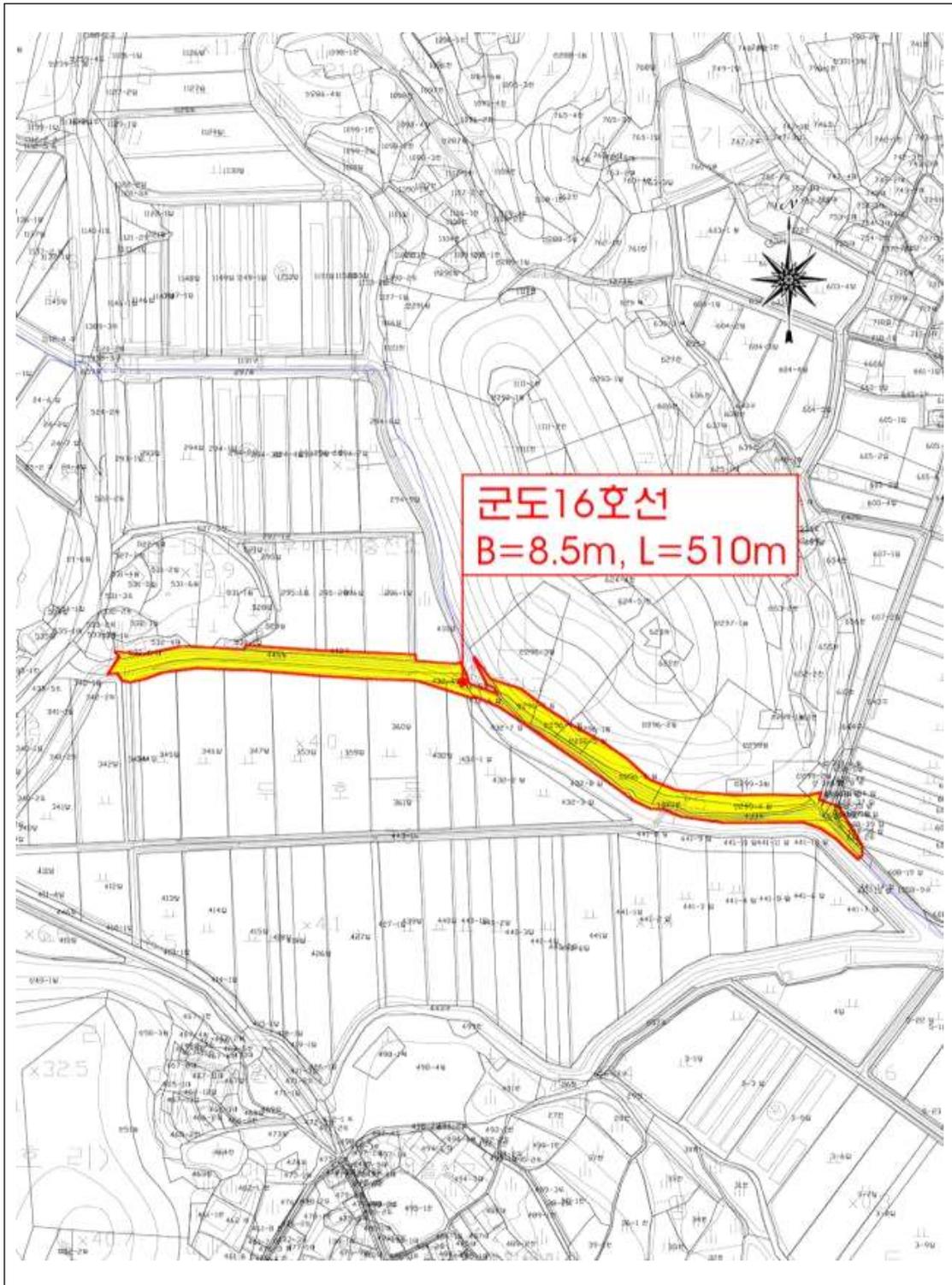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불임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실음생략 (고성군 건설과 비치)

■ 도로구역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36호선) 결정(변경) 조서**

- 군도16호선(곤기마을 진입도로) -

○ 고성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36	8.5	국지 도로	510	두호리 532-6번지	삼락리 613-2번지	일반 도로	-	고성군 고시 제2015-136호 (2015.11.12.)	군도 16호선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2-136호선)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협의**

- 군도16호선(곤기마을 진입도로)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137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가. 종류: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2-136호선) 조성사업
  - 나. 명칭: 곤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없음): L=510m, B=8.5m, A=7,93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없음)
  - 가.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나. 성명: 고성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가.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 나. 변경: 2015. 11. 12.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붙임 참조
7. 관계도서(변경 없음): 실음 생략(고성군 건설과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6,337.1	7,932.0					
1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432	4	답	45.0	45.0	고성군	공			
2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432	5	도로	101.0	101.0	고성군	공			
3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433		도로	338.0	338.0	농림축산식품부	국			
4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442		구거	364.0	364.0	농림축산식품부	국			
5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443		구거	18,653.0	1,888.0	농림축산식품부	국			
6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445		도로	1,855.0	1,650.0	농림축산식품부	국			
7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532	6	대	43.0	43.0	고성군	공			
8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08	17	답	9.1	9.1	고성군	공			
9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08	18	답	38.5	38.5	고성군	공			
10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08	19	답	68.3	7.0	고성군	공			
11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08	35	답	4.7	4.7	고성군	공			
12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08	38	답	36.7	36.7	고성군	공			
13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08	39	답	40.0	40.0	고성군	공			
14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13	2	도로	163.0	100.0	이종*	서울 은평구 갈현동			
15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43		구거	1,116.8	55.0	농림축산식품부	국			
16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58	4	도로	198.0	38.0	여성*	고성군 마암면 곤기길			
17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58	9	도로	8.0	8.0	고성군	공			
18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58	12	도로	7.0	2.0	여성*	고성군 마암면 곤기길			
19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1375		도로	678.0	594.0	국토교통부	국			
20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296	4	임야	66.0	66.0	고성군	공			
21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296	5	임야	44.0	44.0	고성군	공			
22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296	6	임야	334.0	334.0	이호*외 8인				
23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296	7	임야	109.0	109.0	고성군	공			
24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296	8	임야	172.0	172.0	고성군	공			
25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296	9	임야	173.0	173.0	고성군	공			
26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296	10	임야	403.0	403.0	이호*외 8인				
27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296	11	임야	207.0	207.0	고성군	공			
28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299	4	임야	533.0	533.0	고성군	공			
29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299	5	임야	511.0	511.0	고성군	공			
30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300	1	임야	3.0	3.0	고성군	공			
31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300	2	임야	15.0	15.0	고성군	공			

고성군 공고 제2019-471호

###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4. 10.

고 성 군 수

####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고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안 제1조 ~ 제2조)
- 나. 도시재생위원회 및 자문회의(안 제3조 ~ 제4조)
-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주민협의체(안 제5조 ~ 제6조)
- 라.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융자금의 조건(안 제7조 ~ 제8조)
- 마.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2019. 4. 10. ~ 2019. 4. 29.(20일간)

4. 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9. 4. 10. ~ 2019. 4. 29.(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e메일(chhgo80@korea.kr)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접수 : 경상남도 고성군(도시개발과)

1)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 도시개발과

2) 전화: 055-670-2564, 팩스(FAX): 055-670-2559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 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2.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도시재생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성군 계획 조례」에 따른 고성군 계획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과 전담직원 1명 이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 및 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민협의체)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군수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토지·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 대표는 주민협의체 설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주민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9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11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text{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 + \text{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비용발생 수반요인

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도시재생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재생사업 지원 및 특별회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관련조문 :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II. 비용 추계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집행

○ 비용추계기간 : 2019년 ~2023년(5년간)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98,865	196,751	216,426	238,069	261,876	1,111,987
소 계			198,865	196,751	216,426	238,069	261,876	1,111,987

3.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일반회계		198,865	196,751	216,426	238,069	261,876	1,111,987
	특별회계							
	기금							
민간								
기타								
합계			198,865	196,753	216,429	238,073	261,881	1,111,987

4. 부대의견 : 도시재생사업비는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내용(수립 예정)과 각종 공모 사업 추진 결과 등 여건에 따라 변동 요인이 큰 사항이므로 추후 별도 비용을 추계하고자 함

작성자: 도시개발과 지방시설사무관 정 쌍 수

Ⅲ.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항목		예산액 (천원)	산출내역(원)	비고
계		198,865		
도시 재생 지원 센터	센터장 (비상근) 및 자문수당	35,294	- 367,654원×8회(주2회)×12월 = 35,294,000원	엔지니어링 진 흥협회 건설부 문 기술사 노임 단가 기준
	사무국장 (상근)인부임	34,993	- 기본급 1,821,900원×12월 = 21,862,800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12월 = 1,560,000원 - 교통비 120,000원×12월 = 1,440,000원 - 명절휴가비 1,821,900원×60%×2회 = 2,186,280원 - 초과근무수당 10,509×20시간×12월 = 2,522,160원 - 4대 보험료 29,571,240원×약10% = 2,957,124원 - 퇴직적립금 29,571,240원/12월 = 2,464,270원	공무원 7급 1호봉기준
	사무원 (상근)인부임	31,603	- 기본급 1,624,400원×12월 = 19,492,800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12월 = 1,560,000원 - 교통비 120,000원×12월 = 1,440,000원 - 명절휴가비 1,624,400원×60%×2회 = 1,949,280원 - 초과근무수당 9,434×20시간×12월 = 2,264,160원 - 4대 보험료 26,706,240원×약10% = 2,670,624원 - 퇴직적립금 26,706,240원/12월 = 2,225,520원	공무원 8급 1호봉기준
및 위원회	운영수당	24,000	- 100,000원 × 10명 × 24회 = 24,000,000원	
	유인물 인쇄	4,500	- 15,000원 × 25부 × 12월 = 4,500,000원	
도시재생 활동가 활동 수당		35,975	- 749,440원 × 4명 × 12월 = 35,975,000원	
도시재생 민관협의회 운영		2,000	- 2,000,000원 × 1식 = 2,000,000원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유지관리		5,400	- 450,000원 × 12월 = 5,400,000원	
주민대표단 등의 선진지 견학 등		1,500	- 100,000원 × 15명 × 1회 = 1,500,000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조성		20,000	- 집기비품구입 및 사무실 조성 1식 = 20,000,000원	2019년 1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임대료		3,600	- 300,000원 × 12월 = 3,600,000원	

※ 도시재생 활동가 수당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연구보조원 기준단가(1,648,871원/월(22일))
- 1,648,871원/22일/8시간 =9,368원(시간당)
- 월 80시간기준 = 80 × 9,368원 = 749,440원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

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파.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 1. 7., 2015. 1. 6., 2018. 3. 20.>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 제3항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 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23조(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33조(보조 또는 용자의 방법)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용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